



# LPG시설 검사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는 LPG시설 검사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2007.1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련내용을 게재한다.

LPG시설 검사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신규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제3장 시설검사 공통 제2절 완성·정기검사</p> <p>〈신설〉</p>	<p>제3장 시설검사 공통 제2절 완성·정기검사</p> <p><b>제3-7조[LPG충전시설 보호시설과 안전거리 적용방법]</b> '99. 4. 1일 이후 허가받은 시설로서 LPG충전소 허가이후 보호시설의 건축 등으로 액법 시행규칙 별표 3제1호가목(1)(라) 및 (16)(사)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 미유지 시설에 대한 완성(정기)검사시 검사방법은 검사서식에 '사업자의 귀책 사유없이 사업자의 시설로부터 안전거리 내에 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다른 검사항목에 대하여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 검사에 합격처리한다.</p>	<p>○산업자원부 에너지안전팀-1485('06.12.11)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에 대한 검사방법 통보'의 공문에 따라 지시공문[연료620-31809('06.12.14.)]으로 운영중인 것을 지침화</p>
<p>제3장 시설검사 공통</p> <p><b>제3-13조[환기구 통풍면적 계산방법]</b>① 가스설비실 및 용기보관실 등의 환기구에 설치된 갤러리의 통풍 가능면적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내용 생략)</p>	<p>제3장 시설검사 공통</p> <p><b>제3-14조[환기구 통풍면적 계산방법]</b>① - ----- ----- -----.</p> <p>1. (현행과 동일)</p>	<p>○환기구 면적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다양한 크기의 창틀로 인한 업무에 혼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함.</p>

LPG시설 검사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신규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2. (내용 생략) ② 가스설비실 및 용기보관실 등의 벽면에 설치한 자연통풍장치 1개소의 환기구 면적(통풍 가능면적이 아닌 해당 환기구의 가로×세로의 면적임)은 2,400㎠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과 같은 통풍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b>&lt;신설&gt;</b></p> <p>제4장 LPG충전시설</p> <p>제4-7조[내압·기밀시험]①(내용 생략) ②(내용 생략) 1. 완성검사시(내용 생략)</p>	<p>2. (현행과 동일) ②----- ----- 환기구 면적(통풍 가능면적이 아닌 해당 환기구의 창틀을 제외한 가로×세로의 면적임)----- ----- -----</p> <p><b>제3-17조[살수장치 기술검토 및 검사방법]</b> ㉞ 살검토시 살수장치의 노즐은 이물질 등으로 노즐이 막히지 않도록 나선형(Spiral Spray full cone nozzle)구조로 설치하고, 배관 재질은 원활한 작동을 위해 스테인레스강관 등 부식이 되지 않는 재료로 설치토록 유도한다. ㉟ 노즐분출압력은 0.15 MPa 이상이 되도록 설계한다. 살수장치 작동시 노즐분출압력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압력계를 설치하되, 압력계를 입상배관에 설치한 경우 지시압력이 0.25MPa 이상, 압력계를 노즐의 전단에 설치한 경우 지시압력이 0.2MPa 이상이 되어야 한다. ㊱ 완 성(정기)검사시 살수장치를 가동하여 정상작동여부를 확인한다. 검사방법에서 1) 완성검사시 노즐에 호스를 연결하여 1분간 살수량을 물통 등으로 받아서 기술검토시 설계한 분수량이 맞는지 확인한다. 또한, 노즐 분수량 확인이 끝나면 살수장치를 30분이상 작동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이 경우 저수조는 상수도 등과 연결되어 물이 계속 공급되는지 확인한다. 검사방법에서 2) 완성(정기)검사시 살수장치를 5분이상 가동하여 정상작동여부를 확인후 저수조의 살수소비량을 줄자 등으로 측정하여 기술검토시 설계한 분수량과 비교하여 적정여부를 확인한다.</p> <p>제4장 LPG충전시설</p> <p>제4-7조[내압·기밀시험]①(현행과 동일) ②(현행과 동일) 1. 완성검사시(현행과 동일)</p>	<p>○일반 노즐의 경우 이물질 등으로 노즐입구가 막혀서 원활한 작동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나선형 타입으로 설치계도 ※LPG충전소 안전장치 표준화 연구('05.12. 연구원) 자료 참조</p> <p>○노즐의 설계압력은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을 속도의 분사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 미국 NFPA 15 Code에서는 노즐의 방사압력을 1.4bar 이상 요구 ※LPG충전소 안전장치 표준화 연구('05.12. 연구원) 자료 참조</p> <p>○살수장치의 원활한 작동여부 확인방법 제시</p> <p>○기밀시험유지시간은 고시규정에 의하여 유지하여야</p>



LPG시설 검사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신규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2. 정기검사시 가.(내용 생략) 나. 지하매설 배관은 2년마다 상용압력 이상의 압력을 10분 이상 가하여 자기압력기록계 또는 압력계에 의한 기밀시험을 실시하고, (이하 생략) 다. (내용 생략)</p> <p><b>제5장 LPG저장시설</b></p> <p><b>제5-4조[내압·기밀시험]①</b>(내용 생략) ②(내용 생략) ③ 기밀시험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완성검사시 가. (내용 생략) 나. 저장탱크 이외의 배관 등에 대하여는 당해 배관 등의 상용압력 이상의 압력을 10분 이상 가하여 자기압력기록계에 의한 기밀시험을 실시한다.</p> <p><b>제6장 LPG집단공급시설</b></p> <p><b>제6-7조[내압·기밀시험]①</b>(내용 생략) ②(내용 생략) ③ 기밀시험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완성검사시 가. (내용 생략) 나. 저장탱크 이외의 배관 등에 대하여는 당해 배관 등의 상용압력 이상의 압력을 10분 이상 가하여 자기압력기록계에 의한 기밀시험을 실시한다. 2. 정기검사시 가스설비 및 배관에 사용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가스누출검지기 등에 의한 누출검사를 실시하되, 지하매설배관은 2년마다 3.3 kPa(상용압력이 3.3 kPa 이상인 경우 상용 압력) 이상의 압력을 10분 이상 가하여 자기압력기록계에 의한 기밀시험을 실시한다.</p>	<p>2. 정기검사시 가.(현행과 동일) 나. ----- -----10분간 이상 유지한 후----- -----, (현행과 동일) 다. (현행과 동일)</p> <p><b>제5장 LPG저장시설</b></p> <p><b>제5-4조[내압·기밀시험]①</b>(현행과 동일) ②(현행과 동일) ③ ----- -----. 1. 완성검사시 가.(현행과 동일) 나. ----- -----가한 후----- -----.</p> <p><b>제6장 LPG집단공급시설</b></p> <p><b>제6-7조[내압·기밀시험]①</b>(현행과 동일) ②(현행과 동일) ③ ----- -----. 1. 완성검사시 가.(현행과 동일) 나. ----- -----가한 후----- -----. 2. 정기검사시 ----- ----- ----- ----- -----가한 후----- -----.</p>	<p>하나, 압력을 가한 후 10분 동안 정체시키는 것을 기밀 유지시간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문구를 명확히 함.</p> <p>○기밀시험유지시간은 고시규정에 의하여 유지하여야 하나, 압력을 가한 후 10분 동안 정체시키는 것을 기밀 유지시간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문구를 명확히 함.</p> <p>○기밀시험유지시간은 고시규정에 의하여 유지하여야 하나, 압력을 가한 후 10분 동안 정체시키는 것을 기밀 유지시간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문구를 명확히 함.</p>





LPG시설 검사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신규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b>제8-23조[필요 저장능력 산정]</b>①(내용 생략)</p> <p>1. 용기집합설비의 필요 저장능력 가. 자연기화방식의 경우 (1)용기 설치수량=[최대가스소비량(kg/h)÷용기 1개당 가스발생능력(kg/h)×2(예비용기설치) &lt;신설&gt;]</p> <p>(2) (내용 생략) (3) (내용 생략)</p> <p>나. 강제기화방식의 경우 (1) 용기 설치수량=[최대가스소비량(kg/h)×1일평균사용시간(h)÷용기 1개당저장능력(kg)×2(예비용기설치)]</p> <p>(2) (내용 생략) (3) (내용 생략)</p> <p>2. (내용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능력 산정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완성검사시에 한하여 징구(산정)한다. 1. ~ 3. (내용생략) &lt;신설&gt;</p> <p>4. 명판의 훼손 등으로 연소기의 가스소비량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사한 연소기의 가스소비량(kg/h) 값을 취하여 계산한다.</p> <p>5. (내용생략)</p>	<p><u>인당 등의 조치를 취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한다.</u></p> <p><b>제8-24조[필요 저장능력 산정]</b>①(현행과 동일)</p> <p>1.----- 가.----- (1)-----필요가스량(kg/h)----- ----- <u>비고] 필요가스량은 최대가스소비량×1.1로 환산하고, 공동주택은 최대가스소비량으로 한다.</u></p> <p>(2)(현행과 동일) (3)(현행과 동일)</p> <p>나.----- (1)-----필요가스량(kg/h)----- ----- -- (2)(현행과 동일) (3)(현행과 동일)</p> <p>2.(현행과 동일)</p> <p>②----- ----- ----- 1. ~ 3. (현행과 동일)</p> <p>4. 완성검사시에는 별지제2호서식 LPG특정사용시설 시공현황을 징구받아 업무용대형연소기에 대해 불법제품여부를 확인 후 검사를 처리한다.</p> <p>5. LPG특정사용시설 완성검사시 연소기의 검사필증이 부착되어 있지 않는 경우 불합격처리한다. 다만, 검사필증이 훼손되고 명판에 기재된 제조번호와 모델명등을 별지제11호서식에 의해 징구받아 제품에 대해 제조사를 통하여 검사필증과 가스소비량의 추적이 가능한 경우 적합 처리한다.</p> <p>6. (현행과 동일)</p>	<p>○조문 및 오타 수정</p> <p>○업무용대형연소기의 명판교체 또는 표시사항을 임의로 변경하여 유통시키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함.</p>
<p><b>제8-24조[내압·기밀시험]</b></p> <p>1. 내압시험 실시방법 가. ~ 다. (내용 생략) 2. 기밀시험 실시방법</p>	<p><b>제8-24조[내압·기밀시험]</b></p> <p>1. 내압시험 실시방법 가. ~ 다. (현행과 동일) 2. 기밀시험 실시방법</p>	<p>○조문수정</p>

